

제190회 정례회

2001. 7. 10(火)

# 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 관한규칙(안)

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

#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(안)

## 검 토 보 고

1. 발 의 자 : 황태모의원 외 10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01년 6월 16일

○ 회부일자 : 2001년 6월 19일

3. 제안이유

○ 의회기능의 활성화와 도민의 대표로서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책발굴이나 제도개선 등의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가. 연구활동등록은 의장에게 하되 의원 및 연구단체는 1년에 2개이상의 연구활동 참여에 등록할 수 없음.(안 제3조)

나. 연구단체등록 및 연구활동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되 심의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함.(안 제4조)

다. 연구활동비 지원 한도액은 의원 개인의 경우 100만원 이하, 연구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당 300만원 이하로 함(안 제8조)

- 라. 연구활동비는 연 2회로 분할지급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(안 제9조)
- 마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제출토록 함. (안 제11조)

## 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(안)을 검토한 바  
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도의회 의원의 연구활동을  
적극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나 효율적인 의원연구 활동이  
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 
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붙 임 :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(안) 1부